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및 과태료 부과〉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30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및 과태료 부과	2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4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및 과태료 부과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에 해수욕장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및 안 제47조제2항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2. (생략) <u><신설></u> 13. (생략) ②·③ (생략) 제47조(과태료) ① (생략)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해수욕장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u>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 ③ -----각 호(제12호의 2는 제외한다)----- ----- -----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 차마 진입 행위, 불꽃놀이 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같은 법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¹⁾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상레저기구 운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표] 해수욕장 내 금지 규정

구분	주요 내용
제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u>제1항</u>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무허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②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수욕장 이용객의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이용 방해,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 설치, ④ 해수욕장 환경 오염, 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 ⑥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⑦ 차마 진입 행위, ⑧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 ⑨ 금연구역에서 흡연, 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으로 동력 기구 조종, ⑪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자갈·모돌 또는 모래를 채취, ⑫ 해수욕장시설 훼손, ⑬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26조 (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u>제1항</u> 수상레저기구 이용 등 금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 이용·운용 금지
제47조 (과태료)	<u>제2항</u>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제3항</u>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런데, 최근 해수욕장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일부 있고,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상의 해수욕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는 야구나 골프 연습 등의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추가하려는 것으로, 야구·골프 연습 등과 같이 이용객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짐.

-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는 일정 부분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율사항의 구체성 측면에서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현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금지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현재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보면 차마진입 금지, 불꽃놀이 금지, 무선동력기구 조종 금지 등 해수욕장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규율 체계상의 차이가 있음.

- 이와 관련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모호하므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
적인 금지행위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과태료 부과에 있어 기존 유사 금지행위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18